

『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2월 13일

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작전(안보)환경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의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조문 구체화(안 제2조)
 -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- 협의회 분야별 간사 삭제 및 추가(안 제3조)
 - 총무 담당간사 : 삭제
 - 경찰 담당간사 : 구미경찰서 경비과장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6조)
 - 「민방위기본법」 : 제6조 → 제7조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예비군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작전(안보)환경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의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조문 구체화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협의회 분야별 간사 삭제 및 추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음.
※ 「민방위기본법」 : 제6조 → 제7조

○ 검토결과

-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지침 조례 권장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변화하는 작전(안보)환경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의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는 사항으로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